



『건축 문화 도시 경상남도를 만듭시다』
대한건축사협회
경상남도 건축사회



수 신 경상남도지사
 (참 조) 건축주택과장
 제 목 ‘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’ 제출시 주요사항 확인에 대한 도내 시·군청 담당자 홍보 요청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평소 경남 건축문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설계자,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‘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’ 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 ‘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’ 제출시 서식작성 및 확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오니, 해당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도내 시·군청 업무 담당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협조요청 바랍니다.

□ 주요 내용 □

☞ **질의요지** : 나.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변경 전 내용에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?

다. 담당 공무원은 변경 전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?
 라. 만일 건축주가 변경 전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민원 신고가 처리된다면 신고자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?

☞ **회신요지** : 질의 “나·다·라” 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상의 내용을 건축주는 기재하여야 하며, 제출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는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경우 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

붙 임 : 질의회신 내용 사본 1부.



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

기안자 팀장 사무처장 류제욱 총무이사 천용원 부회장 전성종 오공환 회장 김재석

협조자

시 행 경남건 제 232.0 - 79 호 (2020. 2. 20) 접수

우 513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7 다이노스빌딩 402호 / <http://gira.kira.or.kr/>

전화번호 055-246-4530 / 팩스번호 055-245-4530 / rju1010@hanmail.net / 공개

담당자(연락처)	김권중 (044-201-3766)		
접수일	2019-12-31 16:57:42	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1912-760383
답변일	2020-01-02 22:12:35		
답변내용	<p>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객님의께서 인터넷(국민신문고)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.</p> <p>1. 질의요지</p> <p>가. 변경 전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서류는 필요 없는지? (설계, 감리 포기 각서 등)</p> <p>나.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 서식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변경 전 내용에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?</p> <p>다. 담당 공무원은 변경 전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?</p> <p>라. 만일 건축주(또는 민원 접수 대리인)가 변경 전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민원 신고가 처리된다면 신고자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?</p> <p>2. 회신내용</p> <p>가. 질의 "가"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, 건축주는 설계자,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)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○ 따라서,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, 건축주와 공사시공자,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<p>나. 질의 "나", "다", "라"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, 건축주는 설계자,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)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○ 따라서,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상의 내용을 건축주는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는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,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, 군수,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p>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중(044-201-3766)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</p> <p>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</p>		

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[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,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]

답변첨부파일
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인쇄